



제 10 조 클럽항의 조정 절차

제 1 항. 항의 절차.

회원 또는 회원들, 혹은 前회원이나 회원들, 그리고 클럽 또는 클럽이사회 임원간에 회원 혹은 클럽헌장 및 부칙의 해석, 위반 및 적용, 클럽으로부터 제명 등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혹은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문제는 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구총재, 중재인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지명인)가 수속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관계자 전원은 항의과정 동안 행정상 혹은 재판상의 판결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 2 항. 항의조정 요청 및 제소비용.

당사자는 누구든지 지구총재에게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분쟁조정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이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각 지구는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는데 따른 제소비용 청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소비용은 본 항의절차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지구임원회의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US\$250.00 를 넘지 않은 액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로 하여 수취인을 지구로 한다. 분쟁조정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여 모든 비용은 지구가 책임진다. 분쟁조정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여 모든 비용은 지구가 책임진다. 단, 관계자 쌍방이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모든 경비를 동일하게 지불할 것이라고 지구방침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제 3 항. 중재인 지명.

지구총재는 요청서를 접수한 지 15 일 내로 분쟁을 심의한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한다. 중재인은 지구 내에서 분쟁이 발생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소속 굳 스탠딩 회원인 前총재가 될 것이다. 중재인은 분쟁에 관해 편견이 없으며 분쟁관련자 쌍방에게 공정해야 한다. 지구총재가 임명한 중재인은 관계자 쌍방간이 수락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관계자 쌍방이 중재인을 수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서명을 받도록 한다. 지구총재가 임명한 중재인을 수락할 수 없는 당사자는 중재인 수락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구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구총재의 재량에 따라 임명한 중재인이 수락거부 사유서에 기초하여 중립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될 때 지구총재가 상기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을 지명한다. 중재인은 임명되는 즉시 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 4 항. 중재회의 및 중재인의 판정.

중재인은 임명 즉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 지 30 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한다. 중재인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인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중재인이 논쟁에 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지 30 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하도록 하며 중재인의 결정이 관계자 전원에 관해 최종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인의 판정 사본을 관계자 전원, 지구총재 및 요청에 따라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인의 판정은 국제, 북합지구 및 지구헌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 방침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이사회의 재량에 의해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재검토를 받는 조건으로 한다.